

# 「평창군 농촌유학 활성화 및 지원 조례안」

## 심사 보고서

### 1. 심사경과

- 제안일자 및 제안자: 2025년 9월 8일, 남진삼 의원 발의
- 회부일자: 2025년 10월 1일 회부
- 상정일자: 제307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제1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  
(2025년 10월 13일 상정 · 의결)

### 2. 제안설명의 요지(제안설명자: 남진삼 의원)

#### 가. 제안이유

-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제22조의2에 따라 평창군 농촌유학 활성화를 통해 지역학교를 유지하고, 지역 활력을 증진하기 위해 농촌유학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함.

#### 나. 주요내용

- 농촌유학 활성화 노력의 군수 책무(안 제3조)
- 농촌유학 지원계획 수립 · 시행(안 제4조)
- 농촌유학 지원사업 및 보조금 지원 근거(안 제5조)
- 농촌유학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안 제6조)
- 협의회 구성 및 운영(안 제7조 ~ 제11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전문위원: 정유진)

※ 검토보고서 전문 ..... [붙임 1]

4. 질의 및 답변 요지: 「생략」

5. 토론 요지: 「없음」

6. 심사 결과: 「원안가결」

7. 소수의견 요지: 「없음」

8. 기타 사항: 「없음」

붙임 1. 「평창군 농촌유학 활성화 및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서 1부.

2. 「평창군 농촌유학 활성화 및 지원 조례안」 1부.

# 「평창군 농촌유학 활성화 및 지원 조례안」

## 첨 토 보 고 서

### 1. 조례안 개요

- 제 안 자 : 남진삼 의원
- 제안일자 : 2025. 9. 8.
- 회부일자 : 2025. 10. 13.
- 상정일자 : 2025. 10. 13.

### 2. 제안이유

-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제22조의2에 따라 평창군 농촌유학 활성화를 통해 지역학교를 유지하고, 지역 활력을 증진하기 위해 농촌유학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함.

### 3. 주요내용

- 농촌유학 활성화 노력의 군수 책무(안 제3조)
- 농촌유학 지원계획 수립 · 시행(안 제4조)
- 농촌유학 지원사업 및 보조금 지원 근거(안 제5조)
- 농촌유학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안 제6조)
- 협의회 구성 및 운영(안 제7조 ~ 제11조)

## 4. 검토의견

### 가. 관련 근거

-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및 미래산업글로벌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46조에서 군수는 농어촌유학 활성화를 위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제22조의2(2025.10.2. 시행예정)에서 지방자치단체는 농어촌유학의 활성화를 위하여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고 그 계획의 수립 및 지원 대상의 범위 등 지방자치단체의 농어촌유학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제14조에서 지방자치단체는 농어촌유학을 활성화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나. 입법의 취지

- 농촌 유학 지원에 관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우리군의 생활 인구를 증대시키고 지역학교의 존속을 도모하며, 나아가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역 활력 증진에 기여하고자 함.

## 다. 조례안의 주요내용

- 안 제1조(목적) 및 안 제2조(정의)에서 조례 제정의 목적 및 용어의 정의를 규정함.
- 안 제3조(군수의 책무)에서 군수는 평창교육지원청 교육장과 협력하여 농촌유학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도록 규정함.
- 안 제4조(농촌유학 지원계획 수립 · 시행)에서 농촌유학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활성화 지원계획을 수립 · 시행하도록 규정함.
- 안 제5조(농촌유학 지원사업 등)에서 농촌유학 활성화를 위한 지원사업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재정 지원의 근거를 마련함.
- 안 제6조(농촌유학지원센터 운영)에서 농촌유학지원센터의 설치 및 위탁 운영의 근거를 마련함.
- 안 제7조(협의회 구성) 및 안 제8호(협의회 기능), 안 제9조(위원회 임기, 안 제10조(회의), 안 제11조(운영세칙)에서 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 5. 종합검토의견

- 우리군의 학령인구(유치원에서 고등학교까지의 학생수<sup>1)</sup>)는

---

1) 출처 : 한국교육개발원 교육통계서비스 참조(<https://kess.kedi.re.kr/index>)

2010년 5,189명에서 2025년 2,520명으로 2,669명( $\triangle 51.4\%$ )이 감소하였고, 이에 따라 같은 기간 4개 읍면에서 4개교가 폐교<sup>2)</sup>되는 등 교육 기반이 지속적으로 위축되고 있음.

- 본 조례안은 이러한 인구감소와 지역소멸의 위기 상황에서 외부 학생의 유입을 촉진하여 지역학교를 활성화하며 장기적으로 지속 가능한 지역사회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유학생의 거주비, 프로그램 지원사업 등 행·재정적 지원의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입법 취지와 정책적 필요성은 타당하고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
- 다만, 강원도의 농어촌유학 가족체류형 주거비지원 사업(강원도와 교육청 5대5 부담)이 평창군 내 일부 학교<sup>3)</sup>에서 시행 중인 바, 동일 수혜자가 중복 지원을 받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관리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으며, 아울러 귀농·귀촌 정책과 연계한 프로그램 발굴을 통해 농촌유학 정책의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하고 실질적 정착유도와 지역사회 통합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확대하여 농촌유학이 지역소멸 극복의 방안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집행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

2) 계촌초 대미분교장(2012년), 진부초 월정분교장(2012년), 약수초등학교(2016년), 가평초등학교(2020년)

3) 계촌초, 계촌중, 방림초, 주진초, 미탄중

## □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제22조의2(농어촌유학의 활성화)**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어촌유학(인구감소지역 외의 지역에서 인구감소지역으로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른 농어촌유학을 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활성화를 위하여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농어촌유학의 행정적·재정적 지원 계획의 수립 및 지원 대상의 범위 등 지방자치단체의 농어촌유학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③ 농어촌유학의 활성화를 위하여 「초·중등교육법」 제13조제4항, 제14조제2항, 제43조제2항 및 제47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입학 또는 전학에 관한 사항에 한정한다)은 인구감소지역을 관할하는 시·도의 조례로 정할 수 있다.

※ 본조신설 : 2025. 4. 1. 시행일: 2025. 10. 2.

## □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제14조(농어촌체험교육 및 농어촌유학의 활성화)**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유치원의 원아 및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이 농업·어업 및 농어촌의 가치를 교육받을 수 있도록 농어촌체험교육 및 농어촌유학(농어촌 이외의 지역에 소재한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이 교육활동과 농어촌 생활체험을 하기 위하여 농어촌에 소재한 학교로 전학 또는 입학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활성화하기 위한 노력을 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

교에서 운영할 수 있는 농어촌체험·휴양마을 프로그램이나 관광농원 체험 프로그램을 교육감에게 추천할 수 있고, 추천을 받은 교육감은 관할 지역의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에 이를 교육과정으로 운영하도록 권장할 수 있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어촌체험교육 및 농어촌유학의 활성화를 위하여 농어촌체험교육 및 농어촌유학을 운영하는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및 농어촌유학 중인 학생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및 미래산업글로벌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46조(농어촌유학에 관한 특례)** ① 도지사 및 도교육감은 농어촌유학(강원자치도 외 지역의 학생들이 교육활동과 농어촌 생활을 체험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어촌학교로 전학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 및 도교육감, 시장·군수는 각급 학교의 농어촌유학 활성화를 위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및 미래산업글로벌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23조(농어촌학교의 범위)** 법 제46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어촌학교”란 강원자치도에 있는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지역에 소재한 학교를 말한다.

1.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5호의 농촌

## □ 초 · 중등교육법

**제2조(학교의 종류)** 초 · 중등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학교를 둔다.

1. 초등학교
2. 중학교 · 고등공민학교
3. 고등학교 · 고등기술학교
4. 특수학교
5. 각종학교

## □ 농업 · 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1.~4. (생략)
5. “농촌”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말한다.  
가. 읍 · 면의 지역  
나. 가목 외의 지역 중 그 지역의 농업, 농업 관련 산업, 농업인구 및 생활여건 등을 고려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고시하는 지역
- 6.~9. (생략)

# 평창군 농촌유학 활성화 및 지원 조례안

(남진삼 의원)

의안 번호	469
----------	-----

발의 연월일 : 2025년 9월 8일

발의자 남진삼 의원

찬성자 박춘희, 김광성, 이창열 의원

## 1. 제안이유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제22조의2에 따라 평창군 농촌유학 활성화를 통해 지역학교를 유지하고, 지역 활력을 증진하기 위해 농촌유학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함

## 2. 주요내용

- 가. 농촌유학 활성화 노력의 군수 책무(안 제3조)
- 나. 농촌유학 지원계획 수립·시행(안 제4조)
- 다. 농촌유학 지원사업 및 보조금 지원 근거(안 제5조)
- 라. 농촌유학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안 제6조)
- 마. 협의회 구성 및 운영(안 제7조 ~ 제11조)

##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초·중등 교육법」

나. 예산조치 : 붙임 참조(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다. 집행기관의견수렴 : 2025. 8. 22. ~ 8. 29.(의회사무과-13867), 아래표 참조.

조례안(의회안)	수정안(농정과)	검토
(안제2조제2호) ·“농촌유학”이란 <u>평창군</u> (이하 “ <u>군</u> ”이라 한다) 외 지역에 소재한 학교에서 재학 중인 학생이 교육 및 농촌 생활 체험을 위하여 군에 소재한 학교로 전·입학하여 일정 기간 <u>생활</u> 하는 것을 말한다.	·“농촌유학”이란 <u>도시</u> 에서 재학 중인 학생이 교육 및 농촌 생활 체험을 위하여 군에 소재한 학교로 전·입학하여 일정 기간 <u>생활</u> 하는 것을 말한다. ⇒(사유) ·“평창군 외 지역”은 농촌 유학 취지 및 도농 교류확대 목적에 부합하지 않음 ·강원특별자치도 조례에 맞춰 수정할 필요가 있음	1. 농촌유학 정의는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조례상 정의를 따른 것으로 농촌 유학은 현재 강원특별자치도 교육청이 주관·운영하는 사업으로 사업의 기본개념을 따를 필요가 있다 판단되며,  2. 집행부가 제시한 “도시”규정 사유인 도농 교류확대는 농촌간의 교류도 포함되는 것
(안제4조제1항) ·군수는 농촌유학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매년 <u>평창군 농촌 유학 활성화</u> 지원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군수는 농촌유학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지원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사유)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조례처럼 수립의 유연성 부여	수용
(안제5조제1항제2호) · <u>농촌유학 학생 거주비 지원 사업</u>	삭제 ⇒(사유)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거주비 지원과 중복됨	거주비 지원은 농촌유학 참여 확대 및 지역 정착 유도 효과가 기대되는 만큼 교육청 지원만으로는 한계가 있어 보완적 지원이 필요하다 판단되며  더욱이, 거주비 지원은 여러사업 중 하나의 재량적 사업으로 규정한 것으로 군의 정책적 판단에 따

		라 시행 할 수 있는 근거 유지 필요
(안제10조) 협의회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는 경우 회의를 소집한다	<p>① 협의회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는 경우 회의를 소집한다.</p> <p>② 협의회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p> <p>⇒ (사유)          ·제10조는 회의 소집만 규정하고 있어 의결 정족수 기준을 추가 할 필요가 있음</p>	의사정족수만 규정하고 의결정족수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과반수로 정하는 의결정족수는 기본원칙에 따라 규정하지 않음

## 평창군 농촌유학 활성화 및 지원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제22조의2에 따라 평창군 농촌유학 활성화를 통해 지역학교를 유지하고, 지역 활력을 증진하기 위해 농촌유학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학교”란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2. “농촌유학”이란 평창군 외 지역에 소재한 학교에서 재학 중인 학생이 교육 및 농촌 생활 체험을 위하여 평창군에 소재한 학교로 전 · 입학하여 일정 기간 재학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 평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평창교육지원청 교육장과 협력하여 농촌유학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농촌유학 지원계획 수립 · 시행) ① 군수는 농촌유학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평창군 농촌유학 활성화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농촌유학 활성화의 기본 방향 및 목표
2. 농촌유학 활성화를 위한 추진과제
3. 농촌유학 활성화를 위한 재원 확보방안

4. 그 밖에 농촌유학 활성화를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농촌유학 지원사업 등) ① 군수는 농촌유학 활성화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제4조의 지원계획에 반영된 사업
  2. 농촌유학 학생 거주비 지원 사업
  3. 농촌유학 프로그램 개발 및 지원 사업
  4. 농촌유학 모범학교 발굴 및 지원 사업
  5. 농촌유학 사업 활성화를 위한 홍보
  6. 그 밖에 농촌유학 활성화를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② 군수는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추진하는 개인 또는 단체 및 법인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6조(농촌유학지원센터 운영) ① 군수는 농촌유학 활성화를 위하여 평창군

- 농촌유학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 · 운영할 수 있다
- ② 군수는 지원센터의 효율적 관리와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법인 등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 ③ 제1항에 따른 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7조(협의회 구성) ① 군수는 농촌유학 활성화 · 지원사업에 대한 심의 및 자문을 위하여 평창군 농촌유학 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구성할 수 있다.

- ② 협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③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④ 협의회는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하며, 당연직 위원은 농촌유학 담당 부서장이 된다.

⑤ 협의회의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1. 강원특별자치도평창교육지원청 교육장이 추천하는 사람

2. 군의회에서 추천하는 군의원

3. 농촌유학 실행지역 주민대표

4. 농촌유학·교육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5. 그 밖에 군수가 농촌유학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⑥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⑦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협의회 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심의·자문한다.

1. 지원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농촌유학 활성화 사업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군수가 요청하는 사항 등

제9조(위원의 임기) 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위촉직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위원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위원이 스스로 사임을 원하는 경우

2. 위원이 사망, 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위원이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10조(회의) 협의회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는 경우 회의를 소집한다.

제11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관계법령]

###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제22조의2(농어촌유학의 활성화)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어촌유학(인구감소지역 외의 지역에서 인구감소지역으로 「도시와 농어촌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른 농어촌유학을 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활성화를 위하여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농어촌유학의 행정적·재정적 지원 계획의 수립 및 지원 대상의 범위 등 지방자치단체의 농어촌유학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③ 농어촌유학의 활성화를 위하여 「초·중등교육법」 제13조제4항, 제14조 제2항, 제43조제2항 및 제47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입학 또는 전학에 관한 사항에 한정한다)은 인구감소지역을 관할하는 시·도의 조례로 정할 수 있다.

###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제14조(농어촌체험교육 및 농어촌유학의 활성화)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유치원의 원아 및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이 농업·어업 및 농어촌의 가치를 교육받을 수 있도록 농어촌체험교육 및 농어촌유학(농어촌 이외의 지역에 소재한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이 교육활동과 농어촌 생활체험을 하기 위하여 농어촌에 소재한 학교로 전학 또는 입학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활성화하기 위한 노력을 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

교에서 운영할 수 있는 농어촌체험·휴양마을 프로그램이나 관광농원 체험 프로그램을 교육감에게 추천할 수 있고, 추천을 받은 교육감은 관할 지역의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에 이를 교육과정으로 운영하도록 권장할 수 있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어촌체험교육 및 농어촌유학의 활성화를 위하여 농어촌체험교육 및 농어촌유학을 운영하는 「유아교육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유치원,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및 농어촌유학 중인 학생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초·중등교육법

제2조(학교의 종류) 초·중등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학교를 둔다.

1. 초등학교
2. 중학교·고등공민학교
3. 고등학교·고등기술학교
4. 특수학교
5. 각종학교

#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 **1. 비용발생 요인**

제5조(농촌유학 지원사업 등) ① 군수는 농촌유학 활성화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제4조의 지원계획에 반영된 사업
  2. 농촌유학 학생 거주비 지원 사업
  3. 농촌유학 프로그램 개발 및 지원 사업
  4. 농촌유학 모범학교 발굴 및 지원 사업
  5. 농촌유학 사업 활성화를 위한 홍보
  6. 그 밖에 농촌유학 활성화를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② 군수는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추진하는 개인 또는 단체 및 법인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2. 미첨부 근거 규정**

- 「평창군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5항 중 제2호

## **3. 미첨부 사유**

-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 **4. 작성자**

작성자	평창군의회 남진삼의원
연락처	(033) 330 -2500